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00

제출연월일: 2021. 8. 19.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2조)

- (현행) 고등학생 ⇒ (개정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 대학생
- 나. 장학금 신청횟수 및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제한 규정(안 제3조)
 - 통장 1명당 1자녀, 1회(2개 학기)로 신청 한정
- 다.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마련(안 제7조)
 - (현행)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 ⇒ (개정안) 학기별 50만원(연 100만원)

3.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2020-247호)

4.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3276호, 2021. 6. 15.)
- 라. 입법예고: 2021. 6. 7. ~ 6. 28.(21일간)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통장 자녀에게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
 -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3조(장학금 신청) ① 통장은 제2조에 따른 학생 중에서 자녀수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수령액이 본 장학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4조(대상자 추천) 동장은 매 학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 정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장 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해야 한다.
- 제6조(장학생 선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심사기준에 따

라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로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장학금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 지급) ① 구청장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녀소속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②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9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9조(지급 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1. 퇴학 · 정학처분 또는 휴학한 경우
 - 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 3.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② 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2020-247호)」

- 통·리장 사기 진작이라는 운영 취지 부합,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교 학생과 동시에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
- 2021년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예상비용

대 상 자	예상인원	소요예산	비고
○ 중구 전체 통장정수의 15%			
= 303명 × 15% = 45명	45명	45백만원	
- 45명 × 1백만원 = 45백만원			

○ 조례 개정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연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3. 작성자

○ 소 속: 주민소통과

○ 직 급: 행정8급

○ 이 름: 이 지 연

○ 연 락 처: 052-290-3265